

#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시행

신혼부부의 주택구입 대출이자에 대한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‘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지원 사업’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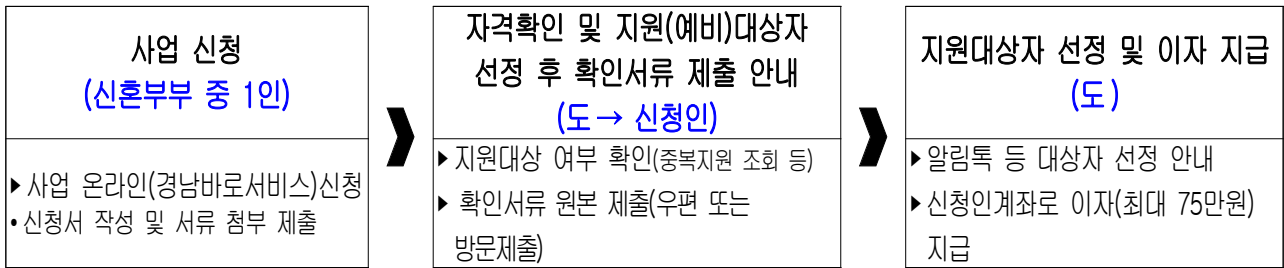
2022. 9. 8.

경 상 남 도 지 사

## 1. 사업개요

- 사 업 명 : 경상남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
- 지원내용 : 주택구입 대출잔액(5천만원 한도)의 이차지원(3%이내)
- 지원금액 : 2022.1월~6월까지 납부한 이차금액(최대 75만원)
- 지원기간 : 매년 상·하반기 신규신청 접수, 연 2회(요건 충족시 최장5년간 지원)
- 지원대상 : 공고일 현재 경상남도에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있는 신혼부부
- 지급방법 : 지원대상자 계좌입금
- 신청방법 : 경남바로서비스(<https://baro.gyeongnam.go.kr/>) 온라인 신청
- 접수기간 : 2022. 9. 13.(화) ~ 9. 26.(월)
- 향후일정
  - 자격확인 및 대상자 심사 : 2022. 9. 27.(화) ~ 10. 21.(금) 예정
  - 지원(예비)대상자 선정 : 2022. 10. 24.(월) 예정(알림톡 개별통보)
  - ※ 대상자 심사 지연 등으로 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
  - 지원대상자 확인서류(원본) 제출 : 2022. 10. 24.(월) ~ 10. 31.(월)
  - ※ 주 소 : (51154)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, 신관 4층 건축주택과
  - \*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(마감당일(10.31.) 우체국 소인분 인정) 접수
  - 지원대상자 최종 통보 및 지원금 지급 : 2022.11월 중
  - ※ 기한이 연기될 시 선정자에게 별도 통보.

## 2. 사업 추진 절차



## 3. 신청 자격

○ 다음 각 항목의 모든 요건이 충족하여야 합니다.

1. 공고일 기준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이 5년 이내인 가구(2017.9.8.이후)
2. 공고일 기준 신청인이 해당주택에 주민등록 상 거주
3. 공고일 기준 전국 기준 1주택(세대구성원 합산) 가구
4. 소득기준 : 부부 합산 연소득 8,000만 원 이하(2021년 귀속분 소득기준)
5. 주택기준

- ① 전용면적 85m<sup>2</sup>이하 주택(도시지역이 아닌 읍·면 지역 100m<sup>2</sup>이하)
- ② 주택가격 4억원 이하(매매계약서 기준)
- ③ 단독주택, 다가구주택, 다세대주택, 연립주택, 아파트, \*주거용 오피스텔  
\*오피스텔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업무시설 용도에 포함되므로 재산세 과세 자료 등 활용하여 주거용 여부 확인
- ④ 혼인신고일 이후 주택 구입(구입일은 등기 접수일을 기준)

6. 대출용도 : ‘주택자금’ 또는 ‘주택구입목적자금’ 용도만 해당  
- 신용·일반대출의 경우 주택자금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지원불가

○ 지원 제외 대상
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)
-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·형제자매 등과 매매계약 체결한 자
- 도내 지자체(의령, 함안, 창녕, 고성, 남해, 산청)에서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당해연도(2022년) 지원 받은 자
-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않은 자
- 대출 용도가 주거 자금이 아닌 자(일반, 신용, 마이너스 대출 제외)
- 그 밖에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

## 4. 신청접수

- 접수기간 : 2022. 9. 13.(화) ~ 9. 26.(월)
- 신청방법 : 경남바로서비스 홈페이지\*에서 신청서 작성 후 제출서류 첨부  
\*홈페이지 : <https://baro.gyeongnam.go.kr/>

## 5. 대상자 선정

- 선정방법 : 자격요건 충족 신청자  
※ 지원금액 초과 시 우선순위 배점표에 따라 고배점순으로 선정  
【우선순위 배점표】

| 평가항목         | 혼인기간               | 부부 합산연소득   | 자녀수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|
| 배점<br>(100점) | 30점                | 40점  | 30점         |
|              | 4년 이상 ~ 5년 이하 : 30 | 3천만원 미만 : 4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자녀 이상 : 30 |
|              | 3년 이상 ~ 4년 미만 : 25 | 3천만원 이상 ~ 4천만원 미만 : 35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자녀 : 25    |
|              | 2년 이상 ~ 3년 미만 : 20 | 4천만원 이상 ~ 5천만원 미만 : 30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자녀 : 20    |
|              | 1년 이상 ~ 2년 미만 : 15 | 5천만원 이상 ~ 6천만원 미만 : 25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무자녀 : 15    |
|              | 1년 미만 : 10         | 6천만원 이상 ~ 7천만원 미만 : 20<br>7천만원 이상 ~ 8천만원 이하 : 15 | *자녀수에 태아 포함 |

- ※ 동점자일 경우 우선순위 : 1. 자녀수가 많은 가구  
2. 부부합산 연소득이 낮은 가구
- 선정결과 알림 : 개별통보(예비 선정 및 최종 선정)

## 6. 유의사항

- 실제 이자를 납부한 금액이 최대 지원액(75만원) 이하일 경우 실납입금액만 지원합니다.
- 허위·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조치 및 향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등 지원사업 신청에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제외대상으로 확인 시 선정 취소됩니다.
-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제출서류가 미흡한 경우 별도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심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주의 바랍니다.
- ※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, 허위 기재, 연락불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.
- 기타사항은 경상남도 건축주택과 (☎ 055-211-4346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*붙임1****제출 서류**

※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(직인날인)여야 함.

|   | 제출 서류  | 발행처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① | 신청인 통장사본   | 신청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② |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(세대원 확인 및 등본상 거주사실 확인)<br>*최근 5년 주소이력 포함<br>*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| 읍면동 행정복지센터<br>무인민원발급기<br>정부24 |
| ③ | 혼인관계증명서(혼인기간 확인)   | 읍면동 행정복지센터<br>무인민원발급기         |
| ④ | 가족관계증명서(형제,자매 확인)<br>- 신청자, 배우자 부모기준으로 각 1부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인터넷(대법원전자가족<br>관계등록시스템)       |
| ⑤ |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(1주택 확인)<br>- 세대원 모두 전국 기준 발급<br>※ 2021~2022년 전국기준 재산세(주택분)     | 시·군청 세정과<br>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     |
| ⑥ | 대상주택 등기부등본(등기접수일, 권리관계, 소유권 변동 여부 확인)  | 무인민원발급기<br>인터넷(대법원 인터넷등기소)    |
| ⑦ | 주택매입계약서(매매계약자 및 주택가격 확인)   | 신청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⑧ | 건축물대장(건축물 주용도, 전용면적 확인)  | 무인민원발급기<br>인터넷(정부24)          |
| ⑨ | 금융거래확인서(대출잔액 및 대출용도 확인)<br>- 금융기관 직인 날인, 신용(일반)대출은 지원 불가                     | 금융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⑩ | 대출 납입증명서<br>(2022년 1월~6월 기간 이자납부내역 확인)<br>- 원리금의 경우 원금 + 이자 납부 내역 별도 표기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⑪ |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(연소득 확인)<br>- 부부 모두 제출<br>-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          | 근무처<br>국세청 홈택스                |
| ⑫ | 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(임신중인 신혼부부일 경우만)<br>- 자녀수에 태아 포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신청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|